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430), 노진만 사무관(4404)

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

-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14. 4. 21.(월) **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**을 위해 **녹지를 해제**하는 경우 기업의 **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**

○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산집법)」 시행령 개정안**을 **입법예고**함.

○ 이는 지난 3월 20일 **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**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**덩어리 규제**로,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**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**임.

*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(녹지→산업시설구역)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이하 산입법)」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

□ 현행 **산집법 제33조 제8항**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(녹지→산업시설구역) 시 **관리권자*가 개발이익을 환수**토록 규정하고 있고

*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, 일반·도시첨단·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○ 산입법 제33조에서는 **개발계획 변경권자*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**하여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.

*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, 일반·도시첨단·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□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**단서조항*을 신설**하여 **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**을 **개발이익 환수 범위**에서 **공제**토록 하려는 것임.

* 신설된 단서조항: 다만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.

○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%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**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**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,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 사례라 할 수 있음.

○ 아울러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**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**하게 하여 기업의 **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**에도 **큰 기여**를 할 것으로 기대됨.

□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**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**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.

<첨부>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노진만 사무관(☎044 -203-440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제2항 중 “관리권자가 산업용지 및 시설을”을 “관리권자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(영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2(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) ① (생 략)	제43조의2(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 관리권자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받을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